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제3차 토론회

삼성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삼성 예외주의 - 김정주(한양대)
- 삼성 지속가능보고서 비판적 검토 - 이승협(대구대),
신태중(함께하는시민행동)
- 삼성전자와 재벌 대기업의 세제 혜택 -강병구(인하대)

[토론]

- 이정환(미디어 오늘)
-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정세은(충남대)

[사회]

- 이병천(강원대)

○ 공동주최:

정의당 국회의원단(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
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관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 시: 2014년 1월 10일(금), 오후 2-5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기획 취지

대안연대회의는 2006년 초 삼성재벌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일련의 토론회를 개최한 다음 발제 원고들의 수정·보완을 거쳐 2008년 5월 조돈문 이병천 송원근이 편집하여 단행본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를 출간했다.

시민들은 삼성에 대해 세계적 기업으로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 형상과 함께 불법·비리를 일삼으며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적 형상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는 시민들의 이중적 시각이 삼성의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데 주목하여 삼성의 “빛과 그늘”에서 그늘을 제거하는 것은 전체 사회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삼성재벌의 성장과 그 비용과 피해를 분석하며 발전적 대안을 모색 제시했다.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는 삼성의 어두운 측면을 구성하는 불법·비리의 구조적 요인들의 세가지 유형을 확인했다. 첫째는 총수 일가가 삼성 그룹에 대한 지배경영권을 독점하고 세습하기 위한 것, 둘째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 셋째는 삼성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의 경제정책과 법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었다.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가 출간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세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재벌의 사회적 지배력은 더욱더 공고화되었다. 이에 삼성재벌의 문제점과 사회적 피해를 우려하는 연구자·활동가들은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의 시론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 시론은 삼성재벌의 사회적 지배력에 주목하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삼성재벌의 사회적 책임성 부재가 삼성재벌의 사회적 지배력 강화와 결부되어 우리사회에 가져다 주는 사회적 비용과 그 피해를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동 프로젝트는 6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발제문들은 토론회 이후 수정 보완을 거쳐 2014년 6월 경 단행본으로 출판하고자 한다.

○ 공동주최:

정의당 국회의원단(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관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문의: 조돈문(010-9414-3265, chodon333@gmail.com),
조대환(010-3710-7225, slw20131210@gmail.com)

제3차 토론회

삼성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삼성 예외주의 -----4p

○ 삼성 지속가능보고서 이대로 좋은가 -----18p

○ 삼성전자와 재벌 대기업의 세제 혜택 -----38p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삼성 예외주의

김정주(한양대)

I. 들어가는 말

- 한국경제에서 삼성그룹이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전체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3.8%에 달했고, 삼성그룹의 상장사 시가총액이 한국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8%에 이른다. 또한 삼성그룹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20~25%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은 만큼 삼성그룹이 없는 한국경제는 점차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다. 만일 삼성그룹이 없는 한국경제를 상상해보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한국의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삼성그룹을 제외하면, 한국증시에서 주가는 20% 가량 하락했을 것이고 정부가 걷는 법인세 또한 20% 정도 줄어들었을 것이라 경제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라 불리는 한국 고유의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여러 폐해들을 걱정해왔는데, 이제는 한국경제 내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문제가 극단적으로 진행돼서 재벌들 가운데서도 삼성이라는 단일 재벌에 의해 한국경제 전체의 운명이 좌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 한국사회 내에서 삼성이라는 단일 재벌이 갖는 경제적 영향력이 독보적으로 커진 만큼 이에 비례해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기업집단으로서 삼성이 갖는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한국사회 전체를 위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순기능을 해왔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사회 내에서 삼성이 갖는 사회정치적 영향력이란 것이 오히려 금권(金權)에 기초해 자기이해를 배타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지배력의 강화와 삼성에 대한 법적 예외주의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사회 내 민주주의를 왜곡해왔을 뿐 아니라

이의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 기업집단으로서 삼성의 발전과정은 그 자체가 온갖 불법과 탈법이 수반된 과정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세기전인 1966년 삼성 창업주 이병철이 연루된 ‘사카린 밀수사건’은 한국사회 내 최대 재벌로서 삼성의 발전과정이 어떻게 반사회적인 불법 및 탈법으로 얼룩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삼성의 반사회성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활동이 불법 및 탈법적 행위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 내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적 지위와 금권에 기초해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국가정책의 결정과 법률의 제정을 위해 사업, 입법, 행정 등 국가기구 전반에 걸쳐 지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또한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삼성은 처벌받지 않고, 처벌할 수도 없다는, 국가권력과 구분되지만 더 이상 대중들이 통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삼성의 문제’는 한국사회에 이중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삼성이라는 단일 재벌의 경제적 실적에 따라 한국경제 전체의 운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삼성에 대한 비정상적 의존상태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건강한 경제적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권력에 기초해 스스로 정치권력화 하면서도 대중들의 정치적 통제로부터는 벗어나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최소한의 책임마저도 회피하고 있는 삼성의 반사회성과 반민주성을 해소함으로써 거대 재벌 삼성을 어떻게 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상기업 혹은 기업시민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후자의 문제는, 그간 삼성 스스로 불러일으켰던 여러 정치적 스캔들과 이로 인해 한국사회 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재벌개혁의 차원을 넘어 그 자체가 한국사회 내 왜곡된 민주주의를 정상화 하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사회가 기업집단으로서 삼성에 요구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성의 내용과 이를 강제할 사회적 수단들을 검토하는 일이야 말로 한국사회 내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될 것이다.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삼성의 경영원칙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적 규범

-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크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뉘어 논쟁이 진행되기도 했다. 현대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파 경제학에선 이윤극대화 외에 기업에게 별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점이 우세한데, 이들에 따르면 기업가들은 오직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능률을 증진시키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고 간주된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 따를 경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이윤을 획득하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며, 기업 외부의 사회적 문제들에 기업이 신경 쓰는 것은 그만큼 다른 비용을 증가시켜 주주에게 돌아갈 이득을 감소시킬 뿐이다. 또한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제품 가격에 전가되어 가격을 올리고 고객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도 저하시킴으로써 새로운 고용의 창출에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경우에도 기업이 사회적으로 져야 할 책임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경제적 성과를 내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기 때문에 기업이 내는 이윤은 당연히 주주들의 몫이어야 하며, 따라서 주인인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자는 당연히 기업경영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오직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이익을 얻게 되는데, 경영자와 노동자는 임금지불을 통해, 지역사회는 기업이 내는 세금을 통해, 그리고 공급업자는 적절한 가격으로 보상받음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리드만에 따르면, 기업은 기부나 자선보다는 차라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게 된다. 결국 현대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파 경제학과 프리드만의 관점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란 기업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된다.

-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이에 비례해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과 지배력이 커지게 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재정의 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강하게 제기되었다. 즉, 기업 또한 사회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하나의 생태학적 존재로 간주될 수 있다면, 기업 또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보다 ‘좋은 사회’를 지향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197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기업이 사회적 요구를 외면할 경우에 이는 사회 전체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기업

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 드러커(Drucker, 1984)는 기업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며, 기업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윤리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고전적이면서 가장 체계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은 캐롤(Carrol, 1991)인데, 그에 따르면 기업은 자기 행동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건전한 기업시민(good corporate citizen)’으로 존재해야 한다. 결국 이들에 따르면, 경제적 성과가 기업의 일차적 책임이기는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제도적 존재인 것이다.

- 캐롤 교수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그리고 자선적 책임 등 네 가지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란 기업 자체가 존재하는 목적으로서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 및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의미한다. 기업의 법적 책임은 기업경영이 공정한 사회적 규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사회가 제정한 법의 범위 내에서 준법 경영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윤리적 책임은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들의 기대, 기준, 가치 등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자선적 책임은 기업의 개별적 판단과 선택에 맡겨진 책임으로서 사회적 기부행위, 보육시설 운영, 문화활동, 자원봉사 등 일반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책임을 의미한다.

-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학술적 논쟁 외에도 유럽연합(EU),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 내부에서도 국가 간 규범으로서 기업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정의하기 위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 가운데 2000년 7월 출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발적 국제협약인 ‘유엔 지구협약(UN Global Compact)’이 가장 포괄적인 국제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엔 지구협약’은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상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Rio) 선언, 유엔 반부패 협약 등에 기초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 등에 걸쳐 다음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10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의 확대에 공모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노동

원칙3: 기업은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인식을 지지하여야 한다.

원칙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요되거나 강제된 형태의 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원칙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원칙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배제하여야 한다.

●환경

원칙7: 기업은 환경도전에 대해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원칙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 증진에 솔선하여야 한다.

원칙9: 기업은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반부패

원칙10: 기업은 부당가격 청구 및 뇌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응하여야 한다.

- ‘유엔 지구협약’은 기업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협약은 아니며, 정부, 기업,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위에서 제시된 기업이 수행해야 할 10가지 공적 책무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지역별, 국가별 네트워크이다. 현재 한국에선 총 253개 기업, 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60여 개의 삼성그룹 산하 계열사 가운데선 아직 ‘유엔 지구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없다.

2. 삼성의 경영원칙과 사회공헌활동

- 앞에서 검토했듯이, 국제적 규범으로서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캐롤 등이 제시한

학술적 정의에 따르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법적-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이러한 정의들은 결국 기업의 경영활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보다 좋은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때 사회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이러한 기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최대 재벌인 삼성이, 기업규모 면에선 글로벌 플레이어로까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적 규범들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삼성 스스로는 5가지 경영원칙으로 법과 윤리의 준수, 깨끗한 조직문화, 고객-주주-종업원 존중, 환경-안전-건강 중시, 글로벌 시민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제시하며 나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5가지 경영원칙의 주요 세부내용들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법과 윤리의 준수

- 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강제노동, 임금착취 및 어린이 노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고객, 종업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 ② 사업 활동에 있어서 대가성 선물이나 뇌물, 향응을 주고받지 않는다.
- ③ 정확한 회계기록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 ④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한다.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깨끗한 조직문화

- ①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회사와 타인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③ 성희롱이나 금전거래,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상호 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공존공영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고객-주주-종업원의 존중

- ① 고객만족을 우선가치로 삼는다.
- ②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추구한다.
- ③ 종업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안전-건강의 중시

- ①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개발, 생산, 판매 등 모든 사업 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 ②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

- 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조세납부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합법적 지원을 통해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③ 지역사회의 법,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삼성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 경영원칙과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유엔 지구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된 10가지 원칙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경영원칙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캐롤 교수가 제시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운데 특히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경영원칙 전반에 걸쳐 강조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기업 내부적으로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제시된 삼성의 경영원칙들은 그 자체로서는 국제적 규범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삼성이 실천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삼성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경영원칙 뿐만이 아니라 삼성이 각 계열사와 그룹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른바 사회적 공헌활동들은 대중들에게 거대하고 오만한 재벌기업으로서의 이미지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는 겸손한 부자 기업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은 기부나 재단설립을 통해 기업이 문화시설의 건립, 사회복지, 학술 및 교육

진흥, 예술 및 스포츠 지원, 종업원들의 자원봉사 등 캐롤이 분류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 가운데 주로 자선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삼성의 경우,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그리고 호암재단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부 및 자선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그룹 내부에 삼성사회공헌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그룹 차원의 사회봉사와 고객협력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총괄토록 해왔다. 삼성은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매년 4,000억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 과거 삼성을 포함한 한국의 재벌들은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사회적 공헌활동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경영 외적인 부가적 활동으로 간주해서 기업의 여유자금 일부를 재량적으로 기부하거나 이를 통해 시혜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선 및 기부활동에 투자 개념이 접목되어 사회적 공헌활동을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즉, 자선 및 기부활동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인 기업에 대한 신뢰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기업은 장기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 삼성이 그룹 내부에 사회공헌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어 매년 4,000억 원이란 적지 않은 비용을 기부 및 자선 활동에 지출하고 있는 것이나 다양한 재단의 설립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투자 개념에 기초해 사회공헌활동을 경영전략 상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조직이란 측면에서 평가했을 때 사회적 신뢰의 획득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삼성의 이러한 경영전략은 그 자체로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삼성은 스스로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경제에 충분한 기여를 해왔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내 다수의 대중은 왜 삼성을 두려워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야 말로 삼성이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훌륭한 ‘기업시민’으로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Ⅲ. 삼성 예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1. 기업이자 동시에 권력인 삼성의 이중성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삼성이 추구하는 경영원칙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에 걸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지구협약’의 규범들을 나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으로서 삼성은 국민경제 내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부합하는 사회적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고자 나름 노력해왔다. 이는 그것이 비록 형식적인 것에 머문다 하더라도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과 역할을 경영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삼성 또한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상징하듯 삼성에 대한 대중들의 시각은 긍정과 부정, 명과 암이 공존하는 다분히 이중적인 것이다. 심지어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조차도 몇 년 전 “(삼성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연구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 진행된 그룹 내부의 대책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단 1%의 반대세력도 포용하는 겸손한 1등이 되겠다.”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생과 나눔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청취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양화하고 사회공헌활동과 협력업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등과 같은 다분히 형식적 결론들뿐이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삼성 스스로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대중들 앞에서 다분히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만 취급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삼성이 한국사회에 낳고 있는 모든 부정적 측면들은 기업으로서의 삼성이 아닌 권력으로서의 삼성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 기업으로서 삼성은 준법경영을 선언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할는지 모르지만, 권력으로서의 삼성은 대중들에게 온갖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고도 결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한국사회 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기억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의 기간만 하더라도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2008년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의혹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 회장 일가가 관련된 불법적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났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삼성 그룹 내부에서

는 회장 일가를 위한 비자금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성되고, 이러한 비자금이 경영권의 불법적 승계와 정치권 및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 내부에선 배임과 횡령에 해당되는 불법적 행위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폭로되었다.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 법적 기소는 이루어졌지만, 불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전무하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조세포탈 및 배임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결국 이명박 정부 하에서 특별사면 받음으로써 모든 재판과 처벌과정이 무효화 되었다.

- 비자금 조성의 불법적 경영승계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지고 이건희 회장은 2008년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지만,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고 난후 23개월 만인 2010년에 다시 그룹 회장직에 복귀하였다. 또한 이건희 회장은 2005년 드러난 대선불법자금 제공 및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재 8,000억 원을 출연해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사재출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8년 비자금 조성의 불법적 경영승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관리하던 2조 원대의 주식을 실명전환해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여전히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를 뒤흔들 정도의 엄청난 불법과 탈법이 자행된 삼성관련 사건에서 사실상 그 누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이들 사건의 최종적 책임자인 이건희 회장과 그 일가 또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성과 회장 일가는 어떤 반사회적, 반기업적 범죄에도 불구하고 결코 처벌받지 않는다는 ‘삼성 예외주의’와 ‘이건희 예외주의’가 대중들에게 깊이 각인되었다.

- 익히 잘 알려져 있다시피,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삼성의 전근대적인 ‘무노조 경영’은 21세기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이전에도 삼성 그룹 각 계열사별로 노조를 설립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삼성은 이러한 시도들을 회유, 협박 등의 방법을 동원해 억눌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오직 노조설립을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은 해고되기 일쑤였다.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이후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법적인 삼성의 반노조주의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자주적인 노조설립을 둘러싼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은 여전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2007년 이후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던 수십 명의 노동자가 작업장에서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백혈병과 뇌종양 등으로 사망하였지만, 삼성은 이에 대한 책임 및 산업재해 인정을 거부해왔으며, 재판을 통해 잇따라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되자 마지못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대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병원인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삼성이 여전히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얼마나 무관심하며, 또한 기업에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도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 2007년 12월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 호’와 삼성중공업 소속의 ‘삼성 1호’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건’은 정부가 태안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할 만큼 엄청난 환경적 재난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주체인 삼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를 보여준 사고였다. 태안군 일대 어민 전체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모두 잃게 된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자살하는 주민이 나오기도 했다. 사고 직후 삼성은 자발적 성금을 내겠다고 했으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고 주체인 삼성중공업의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사고발생 6년이 지난 2013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삼성이 지역 발전금 명목으로 3,6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태안 기름유출 사건’ 또한 삼성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경영원칙과는 달리 기업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 지금까지 살펴본 일련의 사건들에서 나타난 삼성의 행태는 삼성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원칙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또 하나의 가족”임을 자처하는 삼성 스스로는 그간 다양한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을 해왔으며, 그 규모 또한 결코 작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자선적 책임은 기업이 져야 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업의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은 오히려 기업의 탈법성과 비윤리성을 감추기 위한 기만적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까지 삼성이 보여준 사회적 행태는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가운데 가장 핵심적 내용인 법적, 윤리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오직 회장 개인의 사재 출연 등과 같은 자선적 수단을 통해 이를 정당화 해왔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회장 개인의 사재 출연과 같은 사회적 약속 또한 제

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삼성 또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스스로 감당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나 삼성이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에 실질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사실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권에 기초해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배타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스스로 확대해 왔으며, 그 과정이 비록 탈법적이고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결코 어떤 처벌과 책임도 감수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규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다. 결국 한국사회 내에서 ‘삼성의 문제’는 부의 독점이 어떻게 규제되거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작동에 의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 삼성의 정상화를 강제할 수단들

- 한국사회 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스스로 정치 권력화 하는 ‘삼성의 문제’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이다. 하나는 국민경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의 독점적 지위. 또 다른 하나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집단이 이견희 일가의 사적 소유물로 간주되는 기업 내부의 비민주성.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삼성을 ‘기업시민’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단들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 우선 삼성의 지배구조가 갖는 비민주성과 관련해 이견희 일가의 소유와 이들이 갖는 기업 지배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 또한 이와 같은 삼성 내부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의 유지와 이를 통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업 내부에서는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무리한 편법과 불법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음. 따라서 삼성을 정상적인 기업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기업으로서의 삼성과 책임지지 않는 기업가로서 이견희 일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결국 순환출제규제 등을 통한 삼성의 비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삼성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삼성이 여전히 회장 개인 일가의 소유물로 간주되고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이익보다 회장 일가의 사적 이익을 우선해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기업으로서 삼성 내부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보장하기 어려움. 또한 삼성 내부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기업시민’

으로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삼성 내부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국민경제 전체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정상적인 경제구조가 유지되는 한 삼성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제하거나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과는 다른 차원에서 산업생태계 자체를 다양화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함. 이는 곧 한국경제가 불균형적이고 단극형적 성장모델로부터 탈피해 균형적이고 다극형적 성장모델로 전환하는 성장방식의 새로운 전환을 필요로 하는 과정임. 그러나 한국경제 내에서 재벌체제 자체가 지금까지 불균형적이고 단극형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제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성장방식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라도 삼성을 포함한 재벌체제 그 자체를 대신할 새로운 기업제도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산업생태계의 다양화, 그리고 성장방식의 새로운 전환 등은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정치적 권력관계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 이는 곧 한국사회에서 ‘삼성의 문제’는 단지 재벌 개혁이라는 경제적 영역 내의 협소한 문제로서가 아니라 삼성을 정점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재벌-언벌-관벌-군벌이 맺고 있는 지배적인 정치적 동맹체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적 프로젝트 속에서 사고되어야 함.

IV. 맺음말

- 한국경제 전체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짐에 따라 그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 또한 삼성이 정당하게 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온 것이 사실임. 그러나 내부적으로 불법적 경영승계가 정당화 되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불가능한 기업조직에 대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런 측면에서, 삼성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준법경영이나 윤리경영이란 개념 자체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라 할 수 있음. 캐롤 교수의 정의에 따르자면, 지금까지 삼성은 경제적 책임성과 자선적 책임성의 강화를 통해 기업에 요구되는 법적, 윤리적 책임성을 회피해왔다고 할 수 있음. 즉, 형식적으론 사회적 책임성을 확대해온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반

사회성과 반민주성을 강화해왔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마치 한국사회에서 형식적 민주주의의 급격한 확대와 더불어 실질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제약되어 온 것과 유사한 현상임. 이런 측면에서, 삼성이란 거대 기업집단에 대해 한국사회가 법적, 윤리적 책임성을 강제함으로써 그들이 갖는 반사회성과 반민주성을 극복해가는 과정 자체가 한국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가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가 있음. 이는 또한 한국사회 내에서 기업과 권력이란 삼성이 갖는 이중성을 해소하고 삼성을 말 그대로 사회적 규율과 통제 하에 있는 ‘기업시민’으로 재정의하는 일이 될 것임.

삼성지속가능보고서 이대로 좋은가

이승협 /신태중 (좋은기업센터)

1. 서론
2. 이론적 접근
 - 1) 국제규범
 - 2) 평가틀
3. 삼성 지속가능보고서 현황
 - 1) 발간 현황
 - 2) 기존 평가
4. 삼성 지속가능보고서 분석
 - 1) 구성체계
 - 2) 특징과 문제점
5. 결론

1. 서론

자율적 행동규범으로 확산되기 시작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2000년대 이후 점차 제도화의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단순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더욱 더 강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사회적 책임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GRI 기준 37개(2011년 기준)이고, 유엔글로벌콤팩트에도 128개(2011년7월 기준)기업이 가입해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거의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내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기부와 봉사활동이라는 사회공헌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조효제, 2008; Burckhardt, 2011).

일반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지속가능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사회와 환경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여 경영활동을 했는지, 그 결과와 목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보고서이다.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려면 보고서에 담긴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는 보고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며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대한 사항이 빈번하게 누락되고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는 부분이 많은 현실이다. 또한 강점만 지나치게 부각하여 사회적 책임의 실천 정도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고서가 작성되기 보다는 단순한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 역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모범적인 사회공헌 기업집단이라고 자처하는 삼성그룹의 지속가능보고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삼성그룹과 관련되어 그간 제기되었던 수많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기평가를 담고 있을까? 아니면 대부분의 지속가능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그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홍보물에 불과한 것일까? 이 글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근간으로 하여 삼성그룹 계열사가 발간한 지속가능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이론적 접근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규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보편적인 국제규범과 지침에 기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UN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4(G3.1) 지표,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Business and Human Rights Framework), ISO26000 (KS A ISO26000) 등 4가지 국제규범과 지침을 들 수 있다. 이들 국제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각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UN 글로벌콤팩트

UN 글로벌콤팩트는 1999년 당시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제의에 시작되어 2000년에 공식화되었다. UN 글로벌콤팩트는 1990년대 본격화된 세계화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특히 제3세계에 대한 초국적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게 됨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UN과 협약을 맺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율협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UN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UN 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10개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UN 글로벌콤팩트가 강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10개의 원칙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UN 글로벌콤팩트는 기본적으로 세계화로 인해 선진국의 초국적기업이 제3세계 또는 발전도상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외진출국의 낮은 인권기준과 사회적 권리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원칙으로 제시한 10개 사항의 대부분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사회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UN 글로벌콤팩트의 내용이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한 행동규범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

로 10대 원칙의 실질적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시스템, 10대 원칙을 위반 했을 경우의 제재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본적으로 자율적 행동규범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자율적 준수를 검증할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GRI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위해 2002년에 상설 기구화된 비정부기구이다. UN 글로벌콤팩트도 일반이행규정의 하나로 GRI가 제시하고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GRI는 기업이 재무적 성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것과 유사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비재무적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어 행한 행위를 검증하고 공개하는 보고서의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GRI의 가이드라인은 2000년 G1, 2002년 G2, 2006년 G3로 발전해 왔으며, 2013년에 G4가 새롭게 공표되었다. G4는 다른 국제규범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기업의 가치사슬에 대한 고려가 많이 반영되었다.

③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UN 글로벌콤팩트나 GRI가 자율주의적 접근에 기초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데 반해,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폭 넓은 의미에서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제시해주는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인권책임과 관련된 기존의 자율주의적 접근을 벗어나 국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이고 정책적으로 기업인권의 문제에 접근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이전까지의 접근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공정책의 영역과 별개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음에 비해,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인권을 준수하도록 예방하고, 기업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적 내지 비사법적 구제제도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인권책임을 크게 국가와 기업의 역할로 구분하고 있다. 즉 국가는 기업인권을 보호할 의무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구

체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업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호, 존중, 구제”라는 틀 속에 국가의 인권 관련 의무 및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④ ISO26000

ISO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도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제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가 채택한 <사회책임에 대한 지침(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 및 기존에 존재하던 국제규범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표준안으로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ISO26000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국제규범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특히 ISO26000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이 아니라 ‘사회책임’에 관한 지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ISO26000이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되는 일반적 지침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즉 ISO26000이 일반적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으로 설정됨에 따라 국가,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동조합, NGO, NPO 등 모든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할 규범적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ISO26000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7가지 핵심주제와 37개의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7가지 핵심주제는 인권, 노동, 환경, 지역사회 등 다른 국제규범에서 일반적으로 영역으로 불리는 것들이다. ISO26000이 제기하는 7가지 핵심주제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영역으로 구분하는 다른 국제규범에서는 포괄되기 쉽지 않은 조직 거버넌스가 별도의 주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ISO26000은 조직 거버넌스를 “조직이 목표 추구를 위해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ISO26000이 조직 거버넌스를 7가지 핵심 주제의 하나로 설정한 이유는 ISO26000이 조직을 일종의 사회적 구성물인 공동체로 간주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조직을 공동체조직으로 간주하면, 기업의 시장적 지위에서 기인하는 주주의 일방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기업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조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SO26000은 영향권(Sphere of Influence)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즉 조직이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조직 거버넌스에 관여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2) 국제규범에 기초한 검증체계의 재구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 범위 및 거버넌스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분석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영역 및 분야별로 내용을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표 1〉 참조).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UN 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최소한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UN 기업과 인권은 포괄적인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GRI와 ISO26000은 소비자, 지역사회, 거버넌스 및 국가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을 이해관계자와 영향권을 바탕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ISO26000과 GRI는 국제적 표준지침과 사회적 검증체계로서 향후 더욱 그 상호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미 2011년 G3의 개정판인 G3.1이 공표되는 과정에서 ISO26000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으며, 2013년으로 공표된 G4에도 ISO26000의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었다.¹⁾

〈표 1〉 CSR 관련 국제규범의 주요 영역과 세부 내용

국제 규범 영역	UN GC	GRI(G4)	UN 기업과 인권	ISO26000
출현 시기	2000	2002(2013)	2008	2010
인권	1 2	사회 인권 HR1-HR12	III. 기업의 존중책임 A-D	6.3 인권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3.10 Box 7
노동	3 4	경제 시장지위 EC5-EC6		6.3 인권 6.3.3

1) 이 글에서는 삼성그룹의 2013년 지속가능보고서가 여전히 GRI G3.1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GRI를 기준으로 삼성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분석할 때 G3.1을 기준으로 한다. GRI G4는 공표되면서 G3.1에서 G4로의 기준변경에 2년의 전환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삼성을 묻는다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5 6	사회 노동여건 및 관행 LA1-LA15 사회 인권 HR3-HR6		6.3.4 6.3.7 6.3.8 6.3.10 Box 7 6.4 노동관행 6.4.3 6.4.4 6.4.5 6.4.6 6.4.7 6.6 공정운영관행 6.6.4
환경	7 8 9	환경 EN1-EN34		6.5 환경 6.5.3 6.5.4 6.5.5 6.5.6 6.6 공정운영관행 6.6.4 6.6.6
반부패	10	사회 부패 SO3-5		6.6 공정운영관행 6.6.3 6.6.4 6.6.5 6.6.6 6.6.7
소비자		사회 제품책임 PR1-9		6.7 소비자 이슈 6.7.3 6.7.4 6.7.5 6.7.6 6.7.7 6.7.8 6.7.9
지역 사회		사회 지역사회 SO1-SO11 경제 EC7 EC9		6.8 지역사회참여발전 6.8.3 6.8.4 6.8.5 6.8.6

				6.8.7 6.8.8 6.8.9
거버 넌스		지배구조, 책임 참여 G4 24 - G427 G4 34 - G453		6.2 거버넌스 6.2.3
국가 역할			II. 국가의 보호의무 II. A - D IV. 국제책임의 접근성 M. A - E	3.4 국가와 사회책임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대표적 국제규범 및 지침은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계가 있지만, 그 성격과 내용은 상이한 측면이 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UN 글로벌콤팩트, GRI는 기업이 자율적이고 지켜야 할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에 비해,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인권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ISO26000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이 지켜야 할 사회 책임을 지침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기준인 GRI를 주로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도록 하겠다. 최근 공표된 GRI G4는 다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규범, 특히 2011년에 제정된 ISO26000과의 연계성을 많이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 공표된 GRI G4는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 및 검증체계 전환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에 여전히 G3.1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발간된 2013년 삼성그룹 소속 기업들도 모두 G3.1에 기초하여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GRI의 구성항목을 그대로 적용하여 삼성의 지속가능보고서를 평가하기 보다는 GRI와 ISO26000의 항목 간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3. 삼성의 지속가능보고서 현황

1) 삼성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2013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조직(기업 및 단체)은 모두 622개에 달하고 있다. 2003년 4개 기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99개의 조직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중에서 기업이 65개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기타 조직이 각각 22개와 12개로 나머지 1/3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전체	총발간 보고서수	4	6	14	26	45	59	72	100	90	107	99	622
	신규보고서수	4	4	8	15	27	20	25	37	10	20	12	182
기업	발간보고서수	4	6	11	20	34	41	42	64	61	73	65	421
공공기관	발간보고서수	-	-	3	5	10	15	21	25	22	25	22	148
기타(협회/NGO 등)	발간보고서수	-	-	-	1	1	3	9	11	7	9	12	53

자료: 지속가능경영원, 2013.12.27.

2003년 이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 및 단체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매년 신규로 발간된 지속가능보고서의 수는 2010년 37개로 증가하다가 2011년 10개, 2013년 12개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추이가 커다란 변동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이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음을 고려하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초국적기업 또는 완제품이 아니라 외국의 초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비중이 높은 대기업 중심으로 지속가능보고서가 발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수출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선진국 시장에서의 이미지 제고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외국 초국적기업의 요구에 의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이러한 필요성이 적은 기타 기업들은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외적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연간 발간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2013년 현재 9개 계열사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03년 이후 누적기준으로는 총 10개 계열사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삼성SDI의 경우에는 초기인 2003년부터 2013년까지 2004년을 제외하면

매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발간횟수로 보면 상당히 모범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도 2006년 이후 2013년까지 매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여 현재 7년 연속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기타 계열사는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삼성전기와 같이 매년이 아닌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거나, 2010년 이후에 발간을 시작하여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표 3〉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기업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삼성SDI	O	X	O	O	O	O	O	O	O	O	O	10
삼성전자	X	X	X	O	O	O	O	O	O	O	O	7
삼성전기	X	X	X	O	X	O	X	O	X	O	X	4
삼성물산	X	X	X	X	X	X	O	O	X	O	O	4
삼성증권	X	X	X	X	X	X	X	O	O	O	O	4
삼성화재	X	X	X	X	X	X	X	O	X	O	O	3
삼성중공업	X	X	X	X	X	X	X	X	O	O	O	3
삼성엔지니어링	X	X	X	X	X	X	X	X	X	O	O	2
삼성생명	X	X	X	X	X	X	X	X	X	O	O	2
삼성자산운용	X	X	X	X	X	X	X	X	X	X	O	1
합계	1	0	1	3	2	3	3	6	4	9	9	

자료: 지속가능경영원, 2013.12.27. 필자 계산.

이와 같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현황을 살펴보면 주력업종이면서 수출비중이 높은 계열사인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경우 비교적 일찍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부분이 2010년을 전후하여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반면, 삼성SDI와 삼성전자는 2003년과 2006년으로 여타 계열사보다 일찍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SDI와 삼성전자가 지속가능보고서에 일찍 관심을 갖은 이유는 선진국 시장에서의 사회적 책임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사회적 규제가 2000년 대 초반에 강화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규범이 등장하고, 노동조합이 국제기준협약(IFA)을 통해 선진국 초국적기업들을 압박하는 흐름이 2000년 이후 본격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선진국 초국적기업들은 거

래기업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정부가 사회적 책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국가들 역시 증가하기 시작했다(이승협 2009 & 2012).

2) 삼성의 CSR 및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상반된 평가

삼성의 지속가능보고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존 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라서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 정부 및 친시장기관들은 삼성의 경제성과 및 사회공헌활동에 주목하여 삼성의 지속가능보고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에서는 삼성의 환경성과 및 노동탄압 등이 배제된 삼성의 지속가능보고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만적 홍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2011년부터 사회적 책임 평가지표와 모형을 개발해 ‘대한민국 사회적 책임 기업’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넥스트소사이어티(Next Society Foundation, NSF)는 2012년 삼성을 포스코에 이어 2위에 올려놓고 있다(월간 리더피아, 2013). 2011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동반성장위원회 후원으로 국내 대기업 56개를 대상으로, 2012년에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82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순위를 산출하였다. 평가지표는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해 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자발적 기업가정신 등 4대 영역으로 구분된다.

상당히 의외이지만 한겨레신문사의 한겨레경제연구소에서 주관한 2013년 제4회 아시아 미래포럼에서는 2013년 동아시아 사회책임경영 30대 우수기업을 선정했는데,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아시아 30대 우수기업에 포함되었다(한겨레신문, 2013. 10.29일자). 한국기업은 총 8개 기업이 사회책임경영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는데 삼성전자와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 2개가 포함된 것이다.²⁾

환경부는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노동자 논란이 한창이던 2012년 삼성전자를 ‘녹색기업’으로 선정하였다(오마이뉴스, 2012.12.07.일자).³⁾

2) 한겨레 경제연구소는 평가기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으며,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기업의 선정은 상대적 우수성이 아니라 절대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조파괴문건과 같은 결정적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면, 우수기업 선정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수기업이 없다’라는 절대적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책임경영에 더욱 진지하게 접근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환경부는 2012년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4곳도 ‘녹색기업’으로 선정

반면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스위스와 스위스 시민단체인 베른 선언이 선정하는 퍼블릭 아이(Public Eye)상 2011년 ‘최악의 기업’에 삼성전자가 선정되었다(the public eye awards, 2012).⁴⁾ 독일의 oekom research (AG)는 소비자가전의 핵심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소니와 필립스에게는 B-, 삼성전자에게는 C+를 부여했다(oekom research, 2013).⁵⁾

또한 독일의 공정재단(Fairness Stiftung)은 기업의 공정역량(Fairnesskompetenz)을 노동자/협력사, 소비자/고객, 경쟁관계, 환경, 투명성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FairnessStiftung, 2013).⁶⁾ 삼성전자에 대해서 소비자/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노동자/협력사 영역에서는 극악하고 불공정하며,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경쟁관계에서는 독과점 담합과 부패, 환경영역에서는 삼성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이 나빠지고 있으며, 원전 및 무기제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독일의 금융 및 윤리연구소(Finance & Ethics Research)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윤리경영 평가도 부정적이다. 긍정적 측면은 사회공헌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2013년 8월 삼성전자 브라질 마나우스(Manaus) 공장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브라질 정부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으며, 1200명의 브라질 노동자들이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비윤리적 경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FES, 2013). 브라질 노동자들은 삼성전자 공장에서 매일 15시간의 장시간 근로, 월 27일 근무를 강요받았으며, 15시간의 노동일 중 10시간을 조립라인에서 서서 근무해야 했으며, 포장직무의 경우 텔레비전 1대의 포장에 필요한 기준시간을 4.8초로 설정하여 매일 6,800번의 반복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였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8200만 유로의

하였다.

4) 선정의 주된 이유는 삼성SDI 공장의 산업안전보건 소홀로 인한 노동자 백혈병 문제와 반노조정책을 들고 있다.

5) 주요 평가기준은 노동이슈, 생산물의 반환경물질 사용, 에너지효율성, 생산물의 재활용성, 에너지 절감 및 유독물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등이다.

6) 공정재단은 삼성전자의 지속가능보고서(공정성에 대한 약속) 및 언론 보도(공정성 검증)를 통해 공정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참고로 공정재단은 평가 내용에 대해 삼성전자의 입장표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삼성전자의 입장표명 항목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있다. 독일의 좋은성장기금(Good Growth Fund)에서도 사회적 평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가능보고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3년도 지속가능보고서 평가결과에서 글로벌컴팩트의 준수여부에 대해 입장표명을 요구했으나 다른 기업과 달리 삼성전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Good Growth Fund,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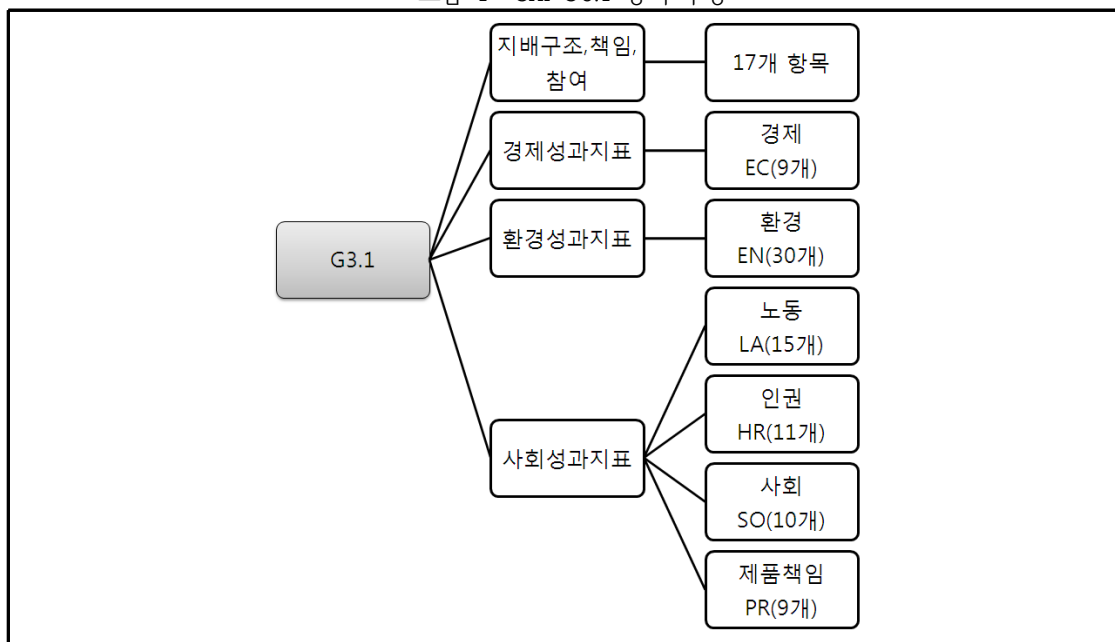
손해배상이 청구된 상태이다.⁷⁾

4. 삼성 지속가능보고서 분석

1) 삼성 지속가능보고서 구성 체계

삼성SDI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지속가능보고서를 GRI G3.1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평가 역시 G4가 아니 G3.1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3.1은 4개 항목 8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4개 항목은 크게 지배구조, 경제, 환경, 사회이며, 사회항목은 노동, 인권, 사회, 소비자로 다시 4개의 하위항목으로 구분된다.

<그림 1> GRI G3.1 항목 구성



자료: GRI, 2011, G3.1 Guidelines.

삼성SDI 및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지속가능보고서의 분석은 삼성SDI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삼성 지속가능보고서가 기본적으로 GRI

7) 동시에 2012년 삼성전자의 중국휴대폰 공장에서 이루어진 아동노동 및 장시간근로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G3.1의 작성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SDI와 삼성전자, 그리고 기타 삼성계열사의 지속가능보고서의 구성 및 서술방식, 검증체계 등은 업종별 특성 이외의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

우선 삼성SDI 및 삼성전자의 지속가능보고서 구성차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3년 지속가능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성SDI 및 삼성전자 지속가능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G3.1 항목을 중심으로 간추리면, 4개 핵심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삼성SDI의 경우, G3.1의 기본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핵심항목과 하위항목을 재배치하여 일부 항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사회공헌에 대한 각별한 강조가 주목된다.

〈표 4〉 삼성SDI 및 삼성전자 지속가능보고서 주요 항목

삼성SDI	삼성전자
이해관계자	기업지배구조
지배구조	경영성과
준법·윤리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거래관계	중요 이슈
지역사회	공유가치창출(CSV)
경제성과	사회공헌
사회성과	동반성장
환경성과	고용(인력채용 및 유지)
검증보고	환경
GRI Content Index	거래관계(협력사 CSR)
ISO 26000	산업안전보건
	검증보고
	GRI대조표

자료: 삼성SDI 및 삼성전자 2013년 지속가능보고서.

형식적으로 삼성SDI 및 삼성전자의 지속가능보고서는 GRI G3.1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의 형식에 대한 서술(보고기간, 보고범위, 검증과정, 보고기준)을 서두에 밝히고 있다. 특히 검증에 있어서 독립적인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기준(ISAIE3000과 AA1000AS Type II, AA1000APS, AA1000SES)⁸⁾을 통과했음을 기재하여 지속가능보고서의 객관성과 진정성을 강

8) AA1000AS(2008)와 AA1000APS(2008)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성과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증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며, AA1000SES(2011)는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국제 표준이다.

조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독립적인 검증기관이라고 제시된 PwC는 삼일회계법인이며, 삼성SDI의 독립적 검증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이다. 삼일회계법인과 한국생산성본부가 독립적인 검증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과연 지속가능의 경제 및 재무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 및 환경적 측면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두 검증기관 모두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지속가능보고서에서 누락된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다. 친기업적 또는 삼성계열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기관에게 지속가능보고서의 검증을 맡긴다는 것을 보면 삼성 지속가능보고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 삼성 지속가능보고서의 특징과 문제점

① 경제성과에 대한 강조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보고서의 상당부분이 경제성과에 대한 강조로 채워져 있다. 삼성SDI 지속가능보고서에서는 <01 창의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과 <경제성과>의 두 항목에 걸쳐 삼성SDI의 기업활동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반면 사회성과지표는 주로 제품책임과 사회공헌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노동과 인권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삼성전자의 지속가능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성과는 <경영성과>, <시장 점유율>, <글로벌 네트워크>, <지속성장하는 삼성전자>, <미래성장동력 확보>, <경제적 가치창출> 등으로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회성과지표는 사회공헌을 제외하면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경성과>에 있어서도 탄소배출과 관련된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제품에 대한 홍보성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② 부정적 사안의 누락과 은폐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지속가능보고서 구성이 사회성과지표를 배제하고, 경제성과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는 사회성과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쟁점 사안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의 지속가능보고서에는 반도체공장 백혈병 근로자와 관련된 언급은 단 한줄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위기관리〉 항목에서 각종 재해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보고서의 기본적인 취지는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성찰적으로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에 있다. 그러나 삼성SDI의 지속가능보고서는 사회적 현안과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지속가능보고서 모두에게서 마찬가지로 노동문제 및 노사관계와 관련된 언급 역시 보이지 않는다. 무노조주의와 노동자 감시 등 이미 알려진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표명도 담겨져 있지 않다.

③ 사회성과지표에서의 사회공헌의 강조

삼성SDI와 삼성전자 지속가능보고서의 또 다른 특징과 문제점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나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삼성SDI와 삼성전자 지속가능보고서의 사회성과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회공헌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GRI 3.1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은 전체 84개 지표 중 경제성과지표 EC1 (직접적인 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예: 수익, 영업 비용, 직원 보상, 기부, 지역사회 투자, 이익잉여금, 자본비용, 세금 등), EC8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과 효과), 사회성과지표 SO1(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 비율), SO5(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SO6(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등 5개 지표에 해당된다. 사회성과지표가 총 35개임을 고려할 때,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부분인 것으로 포장하는 것은 무지에 기인하거나, 문제가 되는 반사회적 활동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삼성의 전략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가 2011년과 2013년에 펴낸 보고서를 보면, 무지라기보다는 반사회적 활동의 체계적 은폐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삼성의 사회적 의제 설정을 대신하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사회공헌을 강조하는 연구보고서를 연달아 발간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사회공헌으로 국한하고, 동시에 사회공헌에 대한 부각을 통해 삼성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체계적인 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⁹⁾

9) 역설적으로 삼성 이견희가 약속했던 1조원 기부는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불법적 행위로 인한 법적 처분을 모면하기 위해 제시했던 기부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존경 받는 기업인이 될 수

④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배제

GRI를 비롯한 글로벌 컴팩트, ISO26000, 기업과 인권, 국제기준협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규범의 핵심적 문제의식은 초국적자본의 통제에 있다. 서구 국민국가 내부의 사회권 강화로 인해 초국적자본은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 해외생산기지를 개척하였다. 문제는 서구 사회 내부에서 초국적자본은 내부적 사회질서에 따라 상대적으로 순치되고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해외생산기지의 현지인 및 현지노동자들에게는 전근대적 수탈자의 행태를 보인다는데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규범은 초국적자본의 모국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해외생산기지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GRI G3.1의 지표 중에서 3.6 보고 경계, 시장지위 측면 (EC5-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 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성별) 비율, 현지 구매정책, 관행 및 비율,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 및 현지 출신 고위 관리자 비율), 지역사회 측면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ISO26000, UN 기업과 인권, 국제기준협약에서도 거래관계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인권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지속가능보고서에는 해외자회사, 해외사업장, 거래업체 및 협력업체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삼성전자 지속가능보고서의 검증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검증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상의 경제적 성과는 회사와 국내외 자회사의 성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지속가능경영 성과는 회사와 주로 생산 법인을 대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경제 성과와 동일한 범위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국내외 주요 자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 범위 확대에 대해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2013 삼성지속가능보고서, 91 쪽).”

있고, 권력엘리트의 담합적 묵인 하에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 한국사회는 사회적 정당성이 부재한 사회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삼성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된 이후 2010년부터 해외사업장 및 현지에서의 인권 침해 및 노동권 박탈과 관련된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2012년 China Labor Watch가 제기한 삼성 현지 사업장에서의 아동노동 및 장시간근로 문제 (China Labor Watch, 2012a & 2012b), 2012년 인도 사업장에서의 불법 파견 노동자 사용으로 인한 노동자 시위, 2013년 브라질 현지 사업장에서의 장시간근로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피소사건 등 해외사업장에서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 지속가능보고서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활동으로 EICC 가입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를 전자업계시민연합체라고 부르며, 마치 EICC가 시민단체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그러나 EICC는 비영리단체이긴 하지만 HP, DELL, IBM 등 8개의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산업 종사 기업들이 모인 일종의 기업단체이다. 삼성 스스로 삼성홍보 홈페이지에서 2012년 EICC 서울 총회를 소개하면서 글로벌 전자업계 CSR협의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http://samsungtomorrow.com/2256>)

EICC의 행동규범에 따르면, EICC 행동규범은 “참여기업은 본 규범이 전 공급망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빠짐 없이 적용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EICC, 2012). 또한 동시에 행동규범은 A. 노동의 7)항 결사의 자유에서 “현지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사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권리, ...를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의 지속가능보고서는 글로벌가치사슬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1996년 이미 유럽 진출 후 2004년 발효된 유럽노동자평의회 지침에 따라 유럽노동자평의회(Euro-Betriebsrat)와 삼성전자 유럽 사이에서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맺고 근로자대표의 참여권을 인정한 바 있다(Euro-Betriebsrat, 1996). 선진국에서는 법적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제3세계에서는 철저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소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¹⁰⁾ 물론 삼성전자가

10) 한국에서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결국 삼성이 한국을 제3세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유럽노동자평의회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것은 자의로 볼 수는 없다. 1995년 독일 삼성의 줄즈바흐(Sulzbach) 사업장에서 독일 공동결정법 규정에 따라 노동자 평의회를 결성하려던 노동자들에게 해고 협박을 하는 등 반노조정책을 내세우다 독일사회에서 반노동자적이고 현지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행태라는 집중포화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반노동자정책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Der Spiegel, 2005).

5. 결론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삼성은 한국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 개발, 화폐에 대한 물신주의로 인해 현대 시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과 집단의 인격적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하는 오도된 가치관이 삼성이 보여주는 한국사회의 현재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의 지속가능보고서는 형식적으로는 규범적 가치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가능보고서의 핵심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 기업은 사회적 핵심적 주도세력이 되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갖게 된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은 그에 걸맞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권리만을 주장하고 사회적 의무를 방기하는 태도는 70년대 개발 독재 시대에서 통했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이 여전히 낡은 구시대적 사고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라고 한정짓고 넘어갈 수는 없다. 삼성이 존재하는 한국사회가 공동체로서의 내적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다른 구성원에게 중요한 의미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지나친 강조, 부정적 사안의 누락과 은폐, 사회공헌에 대한 부각,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배제는 21세기 글로벌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 담겨 있을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선진국과 제3세계에서 삼성이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달리 말하면, 강한 사회적 제도와 압력 하에서는 삼성이 금방 태도를 바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유럽에서 독일노동자평의회 및 유럽노동자평의회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삼성이 국내에서 자신의 구시대적 행태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차선은 삼성이 바꾸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 2011. 기업 사회공헌의 본질: SPIRIT. CEO Information. No. 809.

_____. 2013. 사회공헌의 흐름: '자선'에서 '박애'로. SERI 경영노트. No. 183.

이승협. 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역할: 자율주의를 넘어 제도화로.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18(1): 207-242.

조효제. 2008. 인권경영의 모색: 쟁점과 비판. 『아세아연구』. 51(3): 128-161.

Burckhardt, Gisela. 2011. Mythos CSR. Unternehmensverantwortung und Regulierungslücken. Bonn.

Good Growth Fund. 2013. Nachhaltigkeitsreport 2012/2013.

KPMG. 2013. The KPMG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2013.

Oekom Research. 2013. oekom Corporate Responsibility Review.

삼성과 재벌 대기업의 세제 혜택

강병구(인하대 경제학부)

- 목 차 -

1. 문제의 제기
2.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3. 재벌 대기업의 과세 현황
 - 1) 법인세
 - 2) 상속세 및 증여세
4. 맺음말

제1장. 문제의 제기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수출대기업과 자본 중심의 불균형성장전략 및 선성장후분배정책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개발연대 시기를 거치면서 재벌 대기업은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하였지만, 성장의 결실은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막대한 세제 혜택과 변칙적인 부의 상속을 통해 부를 증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매출액 기준 상위10대와 상위100대 기업의 총부담세액은 각각 전체 법인세수의 9.1%와 39.9%를 차지하였지만, 이들의 실효법인세율은 각각 13.0%와 17.5%를 기록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2%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상위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최저한세율보다 낮다.

이와 같이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 비중이 높은 반면 실효법인세율이 낮은 이유는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각종 법인세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10대 재벌그룹의 매출액 비율은 2012년에 73.3%에 달하였고, 삼성그룹의 매출액 비율은 20.1%를 기록하였다. 더욱이 재벌그룹은 다양한 방식의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를 통해 부의 이전에 따른 합당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낮은 실효법인세율이 세대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행위는 세대 간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기회의 평등마저 제약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면서 소위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양극화시대에 소득수준에 합당한 조세부담은 분배구조의 개선과 사회정의의 실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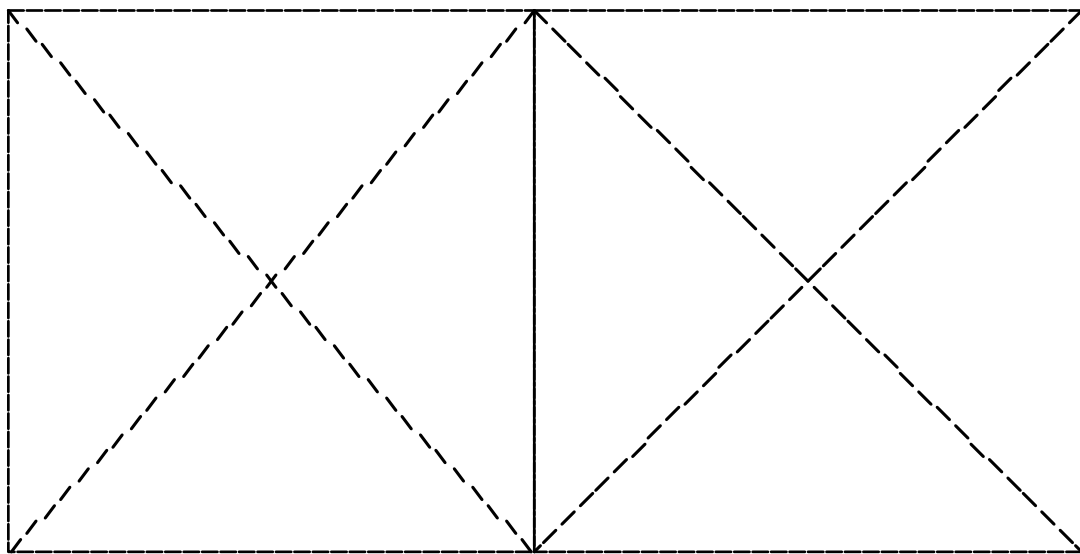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의 실태와 재벌그룹의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행위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제2장에서는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황을 간략히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재벌 대기업에게 집중된 법인세 혜택과 재벌그룹의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행위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상위 재벌그룹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국내총생산 대비 10대 재벌그룹의 매출액 비율은 2003년 41.3%에서 2007년 48.1%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73.3%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총생산 대비 삼성그룹의 매출액 비율은 2003년 10.9%에서 2007년 12.4%, 그리고 2012년에는 20.1%로 증가하였다.¹¹⁾

또한 전체 임금근로자 중 10대 재벌그룹에 고용된 종업원의 비중은 2003년 2.1%에서 2012년 3.1%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삼성그룹에 고용된 종업원의 비중은 0.5%에서 0.9%로 증가했다.

<그림 1> 재벌그룹의 국민경제적 비중(매출액·종업원수)



주: 1대 재벌은 삼성이고, 2-4대 재벌은 현대자동차, SK, LG이다.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자료

2012년 현재 삼성그룹과 10대 재벌그룹의 매출액은 각각 256조 2,357억원과 932조 8,099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각각 26조 9,973억원과 50조 7,755억원이다. 전체 법인의 당기순이익에서 삼성그룹과 10대 재벌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7%와 23.9%이다. 삼성그룹과 10대 재벌그룹에 고용된 종업원수는 각각

11) 김진방(2012)은 국내총생산 대비 10대 및 파생 재벌그룹의 매출액 비율이 2002년 49.7%, 2007년 55.7%, 2010년 72.7%로 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225,012명과 765,752명이다.

제3장. 재벌 대기업의 과세 현황

1. 법인세

1) 우리나라의 법인세

1949년 법인세법 제정을 통해 35%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 4차례의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2014년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20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2%를 적용하고 있다.

연도	과세표준	과세표준 이하	과세표준 초과
1990	8천만원	20	30
1991~1993	1억원	20	34
1994	1억원	18	32
1995	1억원	18	30
1996~2001	1억원	16	28
2002~2004	1억원	15	27
2005~2007	1억원	13	25
2008	2억원	11	25
2009	2억원	11	22
2010~2011	2억원	10	22
2012~2013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표 1 법인세율의 변천 (단위 %)

〈표 2〉에서 보듯이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4.2%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약간 낮지만 일본(37%)과 미국(39.1%) 등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수준이지만 사회보장세의 부담이 크게 낮아 2011년 기업의 실질적인 총조세비용은 이윤 대비 29.8%로 OECD 회원국 중 6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스웨덴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지만,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총조세비용은 53.0%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표 2 주요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및 실효세율>

	최고세율(2013년)			실효세율(2011년)			
	합계	국세	지방세	총실효세 부담률	법인세	사회보장세	기타
한국	24.2	22.0	2.2	29.8	15.2	13.2	1.4
일본	37.0	26.2	10.8	50.0	26.9	17.4	5.6
미국	39.1	32.8	6.3	46.7	27.6	10.0	9.0
영국	23.0	23.0	0.0	35.5	22.2	10.2	3.1
스웨덴	22.0	22.0	0.0	53.0	15.7	35.5	1.9
덴마크	25.0	25.0	0.0	27.7	20.0	3.6	4.0
독일	30.2	15.825	14.4	46.8	18.9	21.9	5.9
프랑스	34.4	34.4	0.0	65.7	8.2	51.7	5.7
그리스	26.0	26.0	0.0	44.6	11.0	32.2	1.3
이탈리아	27.5	27.5	0.0	68.3	22.9	43.4	2.0
OECD평균	25.3	22.8	8.5	42.5	15.7	23.1	3.7

주 1)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은 각각 2013년과 2011년 수치.

2)실효세율은 중견기업(medium-sized firm)을 기준으로 조사한 수치이며, 총실효세부담율은 기업이윤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사회보장세, 기타 법정기여금의 비중.

자료: OECD, Tax Database. IFC and The World Bank(2013)

2)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 현황

2002년 이후 삼성, 현대자동차, SK, LG는 4대 재벌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삼성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실효법인세율을 보면, 삼성그룹의 경우 타 재벌그룹에 비해 실효법인세율이 낮은 수준이다. <표 3>에서 보듯이 2002년부터 2012년의 기간에 삼성그룹의 실효법인세율은 15.6%로 현대자동차(21.2%), SK(21.4%), LG(16.6%)에 비해 낮다. 특히 2008년과 2010년에 삼성그룹의 실효법인세율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¹²⁾ 또한 2012년에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실효법인세율은 각각 18.1%와 18.5%로 지방세를 포

12)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각종 소득공제 및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업소득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2008년 15%, 2009년 13%, 2010~2012년 14%, 2013년 16%이다.

함한 법인세 최고세율 24.2%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기업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실효법인세율은 세무자료를 이용한 것과 일치하지 않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자료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비교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표 3〉 4대 재벌그룹의 당기순이익 및 실효법인세율 (단위: %, 10억원)

	실효법인세율				당기순이익			
	삼성	현대 자동차	SK	LG	삼성	현대 자동차	SK	LG
2002	20.4	24.6	-	23.7	9,014	2,950	-3,039	2,516
2003	14.3	22.6	19.2	18.4	7,585	3,699	3,857	3,487
2004	17.4	27.8	25.8	14.9	13,694	3,922	4,460	5,435
2005	15.3	18.2	22.4	9.2	9,830	5,289	4,578	3,309
2006	16.3	24.2	22.1	-	10,926	3,149	4,240	1,232
2007	16.9	25.2	18.2	14.2	10,683	3,335	4,514	5,159
2008	11.5	15.5	17.0	17.4	9,911	3,767	2,853	4,325
2009	13.4	17.9	20.8	13.4	15,939	7,774	2,615	7,191
2010	12.6	17.9	20.2	8.2	21,625	12,586	4,597	4,621
2011	15.7	20.7	24.5	20.1	16,402	10,968	6,403	2,096
2012	18.1	18.5	23.8	26.3	26,997	12,681	3,741	2,413
평균	15.6	21.2	21.4	16.6	13,873	6,375	3,529	3,799

주 1: 실효법인세율=(당해 연도 법인세비용 합계액/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합계액)*100

2: SK는 2002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적자이고, LG는 2006년 부의 법인세비용을 기록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자료

또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에 비해 낮고, 매출액 기준 상위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2012년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13.0%로 대기업 평균(17.3%)은 물론 중소기업 평균(13.3%)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10년 이후 상위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최저한세율(14%)보다 낮다. 이와 같이 2008년 이후 실효법인세율이 낮아진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세제개혁의 기본 원칙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이 추진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4〉 실효법인세율 (단위: 억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기업	20.5	19.6	16.6	16.6	16.8
대기업	21.6	21.0	17.7	17.6	17.3
(상위10대)	(18.7)	(16.3)	(11.4)	(13.0)	(13.0)
(상위100대)	(20.9)	(20.4)	(16.7)	(16.8)	(17.5)
중소기업	17.2	15.3	13.1	13.2	13.3

주: 실효법인세율=(총부담세액 합계/과세표준 합계)*100. 상위10대와 100대 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2012년의 경우 잠정치. 각 해당 연도 법인세 신고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 2013년 10월 6일.

매출액 기준 분위별 조세부담 현황을 보면 2012년 현재 상위1%의 기업집단은 전체 매출액의 70.81%를 차지하며, 전체 법인세수의 79.65%를 부담하고 있다. 이들 기업집단의 실효법인세율은 17.64%로 〈표 4〉에서 제시된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상위10%의 기업집단의 수입금액과 법인세 비중은 각각 88.6%와 93.4%이며, 이들의 실효법인세율은 17.24%를 기록하고 있다. 상위20%~상위70% 기업집단의 실효법인세율은 약 10% 정도로 낮은 수준이고, 이후 하위 집단에서는 중간집단에 비해 오히려 실효법인세율이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상위 20% 이하 집단의 수입금액 및 법인세 비중은 매우 낮다.

〈표 5〉 수입금액(매출액) 기준 각 분위별 실효세율(2012년)

(단위: 개, %)

	법인수	수입금액 비중	법인세 비중	실효법인세율
상위1%이내	4,606	70.81	79.65	17.64
상위10%이내	46,061	88.61	93.39	17.24
상위20%이내	46,061	5.34	3.08	11.81
상위30%이내	46,061	2.73	1.39	10.49
상위40%이내	46,061	1.56	0.78	9.36
상위50%이내	46,061	0.91	0.44	10.12
상위60%이내	46,061	0.51	0.29	11.06
상위70%이내	46,061	0.25	0.14	10.98
상위80%이내	46,061	0.09	0.13	15.41
상위90%이내	46,061	0.01	0.34	15.45
상위100%이내	46,061	0.00	0.01	16.77
합계	460,614	100.0	100.0	16.65

주: 소득분위는 2012년 국세통계연보 수입금액(매출액) 기준

자료: 홍종학 의원실, '수입금액 100분위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2012년 국세통계연보기준)', 국세청 국회제출자료,

한편 대기업의 경우 실효법인세율이 법정 최고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이유는 다양한 비과세 감면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공제 감면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표 6>에서 보듯이 2012년에 기업에게 제공된 세액공제 및 감면액 9조 4,917억원 중 47.6%에 달하는 4조 5,172억 원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더욱이 법인세 공제 감면액의 74.9%(7조 1,063억 원)는 대기업에 귀속되었으며, 이 중 47.3%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표 6>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2012년) (단위: 개, 억원)

		전체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액 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37,674	100.0	27,054	71.8	10,620	28.2
	최저한세 적용대상	41,090	100.0	37,003	90.1	4,087	9.9
	소계	78,764	100.0	64,057	81.3	14,707	18.7
세액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7,498	100.0	6,562	87.5	936	12.5
	최저한세 적용대상	8,655	100.0	444	5.1	8,211	94.9
	소계	16,153	100.0	7,006	43.4	9,147	56.6
공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45,172	100.0	33,616	74.4	11,556	25.6
	최저한세 적용대상	49,745	100.0	37,447	75.3	12,298	24.7
	합계	94,917	100.0	71,063	74.9	23,854	25.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3.

더욱이 법인세액 공제 및 감면은 상위 10대와 100대 기업에 집중되었다. <표 7>에서 보듯이 2008~2012년의 기간에 전체 기업에게 제공된 40조 718억원의 세액공제 및 감면액 중 상위10대와 100대 기업이 각각 23.6%와 43.2%를 차지했다. 이는 매출액 기준 상위10대 기업의 경우 2010~2012년의 기간에 실효법인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표 7> 상위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비중 (단위: 억원, %)

	전체 기업	상위10대		상위100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8년	66,988	17,788	26.6	28,977	43.3
2009년	71,483	12,102	16.9	28,982	40.5
2010년	74,014	13,671	18.5	31,813	43.0
2011년	93,315	26,808	28.7	44,560	47.8
2012년	94,918	24,190	25.5	38,944	41.0
합계	400,718	94,559	23.6	173,276	43.2

주: 각 해당 연도 법인세 신고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 2013년 10월 6일.

또한 <표 8>에서 보듯이 상위10대와 10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법인세 공제비율)은 2012년에 각각 41.1%와 20.4%에 달하여 전체 기업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2008~2012년의 기간에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비율은 중소기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8> 법인세 공제감면비율 (단위: 억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기업	15.2	17.0	19.9	19.7	19.0
대기업	13.0	15.0	18.0	18.3	17.6
(상위10대)	(25.3)	(34.7)	(49.3)	(40.7)	(41.1)
(상위100대)	(16.4)	(18.5)	(24.5)	(23.7)	(20.4)
중소기업	23.2	24.3	27.0	25.6	24.9

주: 법인세 공제감면비율=(법인세 공제감면액/(공제감면액+충부담세액))*100. 상위10대와 100대 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2012년의 경우 잠정치. 각 해당 연도 법인세 신고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 2013년 10월 6일.

<표 9> 수입금액(매출액) 기준 각 분위별 법인세 공제감면비율(2011년) (단위: 개, %)

	공제감면 총액	외국납부세 액공제	비중1	비중2	공제감면비 율1	공제감면비 율2
상위1%이내	73,440	14,914	78.70	75.66	19.54	16.22
상위10%이내	87,167	15,713	93.41	92.37	19.73	16.77
상위20%이내	3,128	31	3.35	4.00	21.12	20.96
상위30%이내	1,200	16	1.29	1.53	18.48	18.28
상위40%이내	1,160	11	1.24	1.49	28.13	27.94
상위50%이내	254	5	0.27	0.32	13.29	13.06
상위60%이내	121	0	0.13	0.16	9.95	9.95
상위70%이내	82	28	0.09	0.07	13.10	9.03
상위80%이내	22	2	0.02	0.03	4.15	3.79
상위90%이내	179	154	0.19	0.03	12.21	1.91
상위100%이내	2	0	0.00	0.00	3.64	3.64
합계	93,315	15,960	100.00	100.00	19.73	16.93

주: 소득분위는 2012년 국세통계연보 수입금액(매출액) 기준. 비중2와 공제감면비율2는 공제 감면총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거한 후 산출
자료: 홍종학 의원실, '수입금액 100분위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2012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국세청 국회제출자료,

또한 <표 9>에서 보듯이 2011년에 매출액 기준 상위1% 기업의 공제감면액 비중은 78.7%로 7조 3,440억원이고, 이들 기업집단의 법인세 공제감면비율은

19.5%를 기록하였다. 공제감면총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빼고 계산할 경우 공제감면액 비중과 공제감면 비율은 각각 75.7%와 16.2%로 줄어든다. 상위10% 기업집단의 경우 공제감면총액 기준 공제감면액 비중과 공제감면비율은 각각 93.4%와 19.7%에 달하였다.

〈표 10〉에서 보듯이 법인세 공제감면액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매출액 기준 상위10대 법인의 비중이 크고, 절대액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조 2,416억 원으로 가장 크다.

〈표 10〉 상위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주요 내역(2012년) (단위: 억원, %)

	전체 법인	상위10대 법인	
		금액	비중
임시투자 세액공제	26,690	12,416	46.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3,113	6,987	30.2
외국납부세액공제	15,960	5,849	36.6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3,825	899	23.5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1,063	445	41.9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600	33	5.5
해외자원개발투자비당소득감면	251	40	15.9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135	5	3.7
기타	21,678	134	0.6
합계	93,315	26,808	28.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 2013년 10월 6일.

한편 2012년 주요 삼성계열사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납부현황을 보면, 삼성전자,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물산, 삼성에버랜드,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윈, 삼성정밀화학 등에서 비교적 낮은 실효법인세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표 11〉에서 보듯이 2012년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17조 3,985억 원으로 삼성그룹 전체 당기순이익의 64.4%를 차지하였고, 당해 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비용은 3조 3,493억 원으로 16.1%의 실효법인세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법인세법의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비용과 실제의 법인세비용의 차액으로 표시한 조세지원액은 1조 6,717억 원으로 33.3%의 조세지원비율을 기록하였다.

〈표 11〉 주요 삼성계열사의 실효법인세율 및 조세지원 비율(2012년) (단위: 억원)

	당기 순이익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 용	조세 지원액	실효 법인세율	조세지원 비율
삼성전자	173,985	207,479	33,493	16,717	16.1	33.3
삼성코닝정밀소재	12,677	15,470	2,693	111	17.5	4.0
삼성생명보험	9,354	11,798	2,444	411	20.9	14.4
삼성화재해상보험	7,605	9,858	2,253	128	22.9	5.4
삼성카드	7,499	9,855	2,357	28	23.9	1.2
삼성중공업	7,412	9,789	2,377	-13	24.3	-
삼성엔지니어링	5,190	6,854	1,664	-10	24.3	-
삼성전기	4,981	6,497	1,516	51	23.3	3.3
삼성물산	4,161	4,586	425	681	9.3	61.6
삼성에스디에스	3,611	4,688	1,077	53	23.0	4.7
제일모직	2,409	3,234	825	-47	25.5	-
삼성에버랜드	1,513	1,842	329	116	17.9	26.1
삼성종합화학	1,371	1,457	86	262	5.9	75.3
삼성증권	1,254	1,628	374	15	23.0	3.9
삼성테크윈	1,029	1,211	182	106	15.0	36.8
호텔신라	1,014	1,334	320	-2	24.0	-
에스원	922	1,205	283	4	23.5	1.4
삼성정밀화학	813	930	117	104	12.6	47.1
삼성전자판매	80	103	23	-0.4	22.3	-

주 1: 조세지원액=(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율)-법인세비용, 조세지원비율=(조세지원액/(법인세비용+조세지원액))*100.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적자이거나 법인세비용이 마이너스인 기업 제외.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감사보고서』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 및 조세지원 현황을 보면, 1998년 이후 실효법인세율은 낮아지고 조세지원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2〉에서 보듯이 1998-2002년의 기간에 실효법인세율과 조세지원 비율은 각각 20.4%와 32.9%를 기록했지만, 2008-2012년의 기간에는 각각 12.8%와 47.8%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 2011년의 기간에 실효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다양한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인해 소득 대비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비용인 작기 때문이다. 〈표 13〉에서 보듯이 2012년 삼성전자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조 8,715억원으로 이는 당해 연도 전체 기업 세액공제감면액 9조 4,918억원의 19.7%이며,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 3조 3,493억원의 55.9%에 해당한다. 2008~2012년의 기간에 삼성전자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7조 7,113

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액의 19.2%를 기록했다.

〈표 12〉 삼성전자의 실효법인세율 및 조세지원 비율

(단위: 억 원)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조세지원액	실효 법인세율	조세지원 비율
1998	4,109	976	289	23.8	22.9
1999	40,280	8,576	3,830	21.3	30.9
2000	81,004	20,859	4,090	25.8	16.4
2001	30,826	1,357	8,137	4.4	85.7
2002	88,705	18,187	8,158	20.5	31.0
(소계)	244,924	49,955	24,504	20.4	32.9
2003	69,045	9,455	11,051	13.7	53.9
2004	131,245	23,378	15,602	17.8	40.0
2005	88,705	12,303	12,091	13.9	49.6
2006	92,162	12,997	12,347	14.1	48.7
2007	86,300	12,050	11,682	14.0	49.2
(소계)	467,457	70,183	62,773	15.0	47.2
2008	59,082	3,823	12,424	6.5	76.5
2009	108,405	11,910	14,324	11.0	54.6
2010	150,293	17,929	18,442	11.9	50.7
2011	115,183	14,701	13,173	12.8	47.3
2012	207,479	33,493	16,708	16.1	33.3
(소계)	640,442	81,856	75,071	12.8	47.8

주 1: 조세지원액=(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율)-법인세비용, 조세지원비율=(조세지원액/(법인세비용+조세지원액))*100.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자료

〈표 13〉 삼성전자의 세액공제감면 현황

(단위: 억 원)

	전체 기업	삼성전자	
		금액	비중
2008년	66,988	10,382	15.5
2009년	71,483	8,005	11.2
2010년	74,014	26,784	36.2
2011년	93,315	13,227	14.2
2012년	94,918	18,715	19.7
합계	400,718	77,113	19.2

출처: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각 연도, 박원석 의원실(2013)에서 재인용.

한편 〈표 14〉에서 보듯이 2012년 3월 말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사내 유보금은 총 313조원이고, 이 중 58.5%인 183조원을 10대 재벌이 차지하고 있

다시 삼성을 묻는다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다. 특히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은 101조 6,512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의 32.5%를 차지하였다.

〈표 1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사내유보금 현황(2012년 3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순위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금액	비중
1	삼성	101,651,224	32.5
2	현대자동차	33,657,935	10.8
3	SK	5,323,118	1.7
4	LG	7,461,645	2.4
5	롯데	10,184,787	3.3
6	현대중공업	13,640,147	4.4
7	GS	4,381,269	1.4
8	한진	442,886	0.1
9	한화	3,965,491	1.3
10	두산	2,377,627	0.8
합계		183,086,129	58.5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전체		313,032,583	100.0

출처: 추미애 의원실, “재벌 과다사내유보금 어떻게 쓸 것인가?”, 정책토론자료집, 2012.9.

2.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 및 증여세의 목적과 현황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맞서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¹³⁾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한다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일반적 논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도 1950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7년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⁴⁾

13) 상속세와 증여세의 찬반양론에 대해서는 Gale, Hines Jr, and Slemrod(2001) 참조.

14)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결정. 성낙인·박정훈·이창희(2003)에서 재인용.

또한 다음과 같은 철강왕 카네기와 아셔(Ascher)교수의 진술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¹⁵⁾

“[상속세야말로] 모든 세금 가운데 가장 현명한 세금이다. 평생토록 재산을 모으고 지키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재산형성의 주된 원천인 국가나 사회의 정당한 몫을 차지하였음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였더라면 그 재산은 이미 사회에 이바지했었을 것이다. 죽을 때 가서 상속재산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부자의 평생에 대한 국가의 定罪이다.”¹⁶⁾

“내 주장은 건강하고 어른이 된 자에 대한 상속을 없애자는 것이다. 타고난 능력은 어찌할 수 없다. 나아가,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한,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도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운 가운데 한 가지는 통제할 수 있고 또 통제해야 마땅하다. 부모를 잘 만나 잘 크고 교양을 물려받고 좋은 교육까지 받은 자식들에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또 다른 행운까지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¹⁷⁾

상속세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에 따라 계산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영리법인이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15) 성낙인·박정훈·이창희(2003)에서 재인용.

16) Andrew Carnegie, *The Gospel of Wealth*, Applewood Books; Reprinted edition, 1998.

17) Mark L. Ascher, “Curtailing Inherited Wealth,” 89 *Michigan Law Review* 69, 1990-1991.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세율은 <표 15>와 같다.

<표 15> 상속세및증여세 법정세율

(단위: %)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

2) 변칙 상속 및 증여와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상속세의 본질을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상속세는 필연적으로 증여세제도를 수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완전포괄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은 1950년 제정 당시부터 1979년까지 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유지하다가, 1979년 12월 28일의 상속세법 개정을 통해 신주의 실권을 통한 간접증여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간접증여에도 포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던 조문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까지 현물출자, 불균등 감자, 신주인수권의 배정이 없는 증자, 합병, 저가매매에 뒤이은 상장 등 다양한 방식의 변칙증여를 통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생전에 공익재단에 주식을 출연하고, 공익재단이 이를 다시 후계자로 지명된 이건희 당시 부회장에게 되파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이 1987년 자산 7조원짜리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면서 낸 상속세는 176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정주영 현대 창업주는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2세들에게 헐값에 넘기는 이른바 ‘물타기 증자’를 애용했다. 이후 계열사가 상장을 하면 주식가치가 급등하고, 2세들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두었다.”¹⁸⁾

이에 정부는 변칙상속 및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1990년 12월 31일 상속세법 개정을 통해 합병과 증자감자에 대한 증여의제 조문을 도입하였지만, 이후에도 합병이나 증자감자 이외의 방식을 통해 변칙증여가 계속되었다. 한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사이에 삼성그룹 대주주의 아들 이○○는 아버지로 부터 현금 60억 8천만원을 증여받고 이에 대하여 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다음, 남은 44억원 중 23억원으로 1995년 말 중앙개발(주)(현 에버랜드)로부터 (주) 에스원 주식 121,880주를 매입하였다. 이○○가 에스원 주식을 산 직후인 1996년 1월 30일 에스원은 주당 공모가 15,000원으로 상장되었고, 그 뒤 에스원의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30만원 대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는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여 총 375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또 1995년 말 이○○는 당시 비상장회사인 삼성엔지니어링(주)의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하였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상장된 후 다시 이를 처분하기 시작하여 총 23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뒤이어 1996년 3월 22일 이○○는 제일기획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18억원 어치를 주당 1만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수하였다. 그 후 제일기획은 1998년 3월 3일 상장되었고 이○○는 상장 직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 299,375주(지분율 20.79%)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었다. 상장 후 제일기획의 주식은 연속 13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하는 진기록을 달성하였고 이○○는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¹⁹⁾

김용철(2010)에 따르면 2009년 5월 29일 대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에 대해 최종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삼성의 이재용은 고작 16억원의 세금을 내고 200조원(2009년 9월 16일 기준) 이상에 달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를 물려받았다. 에버랜드는 ‘이재용→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의 핵심고리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한 최종 무죄판결을 놓고, 이재용이 아버

18) 광정수(2013)에 따르면 재벌 총수들의 불법 상속 방법은 3단계의 진화과정을 거친 것으로 설명된다. 1단계는 주식을 직접 헐값에 넘기는 방법이고, 2단계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3단계는 일감 몰아주기 방법이다.

19) 광노현·윤종훈·이병한, “삼성3세 이재용”, 오마이뉴스, 2001. 성낙인·박정훈·이창희(2003)에서 재인용.

지에게 받은 61억 원을 밀천으로 에버랜드를 장악했다. 당시 이재용이 낸 증여세가 16억 원이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45억 원으로 에버랜드를 장악한 셈이다.

이에 1996년 12월 30일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법조문이 예상하지 못한 맹점을 이용한 변칙증여가 계속되었다. 한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환사채를 통한 변칙증여의 증여의제 대상자인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한 자’가 들어있을 뿐이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들어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삼성전자(주)는 1997년 사모전환사채(CB) 600억 원 어치를 발행하면서 그 가운데 450억 원 어치를 액면 이자율 7%로 이재용에게 인수시키고, 나머지 150억 원 어치는 삼성물산(주)에게 인수시켰다. 이 전환사채의 가격은 50,000원이었는데, 이 전환가격은 공시일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 56,700원보다 저가였을 뿐만 아니라 1997년 6월 해외시장에 발행한 전환가격 123,635원, 액면이자율 0%의 전환사채와 비교할 때 현저히 저가였던 것으로 평가된다.”²⁰⁾

이에 1998년 12월 28일 분할합병을 악용한 변칙증여에 관한 조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신설하였고, 2002년 12월 18일에는 유형별 포괄주의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형을 14개로 확대하였다. 2003년 1월 1일부터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으로 운용하던 8가지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에 대하여도 예시된 과세방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열거된 14개 유형 이외에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마침내 2003년 12월 30일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²¹⁾

최근에는 회사기회의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재벌총수 일가의 자식과 후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채이배(2011)에 따르면 2006년 9월 이후 2010년 말 현재까지 29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2명의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해 얻은 부의 증식 규모는 총 9조 9,588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처음에 투입한 금액이 1조 3,195억 원이므로 증가된 부의 규모는 8조 6,393억 원으로 평가된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2조 1,837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조 439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

20) 한국일보, 1997. 10. 1.자 기사. 성낙인·박정훈·이창희(2003)에서 재인용.

2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국세청·한국조세연구포럼(2010) 참조.

로 파악되었다.

또한 <표 16>에서 10대 재벌그룹의 회사기회 유용 등을 통한 부의 증가액을 보면, 같은 기간에 현대자동차와 SK의 경우 각각 38.18%(3조 8,021억원)와 25.26%(2조 5,154억원)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삼성의 경우는 694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0.86%를 차지하였다.

<표 16> 10대 재벌그룹의 회사기회 유용 등을 통한 부의 증가액 (단위: 백만원, %)

	금액	비중
합계	9,958,766	100.00
삼성	69,350	0.86
현대자동차	3,802,055	38.18
SK	2,515,371	25.26
LG	63,253	0.64
롯데	13,602	0.14
현대중공업	-	-
GS	513,504	5.16
한진	13,234	0.13
한화	54,658	0.55
두산	26,230	0.26

출처: 채이배(2011)

이에 2011년 12월 31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와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을 도입하고, 2012년에 이루어진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2013년 7월에 첫 과세가 이루어졌다. 증여의제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을 통해 산출하며, 조문 도입당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은 각각 30%와 3%이었다. 2013년 1월 1일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2013년도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비율의 1/2만을 차감하도록 하여 정상거래비율의 공제가 15%로 낮아졌다.

$$\begin{aligned} \text{증여의제이익} &=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과와의 거래비율} - \text{정상거래비율}) \\ &\quad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text{한계보유비율}) \end{aligned}$$

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현황

국세청(2013)에 따르면 2013년 7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의 신고대

상자 10,658명 중 96.9%인 10,324명이 1,859억원의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법인 유형별로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며,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차지하였다. 공기업 등을 제외한 42개 기업집단 중 83.3%인 35개 기업집단이 증여세를 신고했고, 42개 기업집단 소속기업 1,500천개 중 11.8%인 17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했다. 일반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며, 776억원을 납부하여 전체 납부세액의 41.7%를 차지했다. 중소기업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75.9%인 7,838명이며, 282억원을 납부하여 전체 납부세액의 15.2%를 차지하였다.

〈표 17〉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실적 종합현황

(단위: 개, 명, %, 백만원)

구분	법인수	신고인원	내부거래 비중	평균 자본율	증여이익	납부세액	1인당 세액
재벌	177	154	67.4	21.9	242,216	80,147	520
일반기업	1,507	2,332	72.3	31.0	387,879	77,655	33
중소기업	4,405	7,838	69.7	40.4	222,800	28,147	4
합계	6,089	10,324	70.3	37.1	852,895	185,949	18

출처: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2013.10.8.

한편 채이배(2013)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의 실제 실효세율은 세무상 실효세율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의 실효세율은 일감몰아주기로부터 발생한 실제의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액의 비율이다. 세무상의 실효세율이 실제의 실효세율보다 큰 것은 증여세도 실제이익에서 공제, 감면 사항이 적용되어 세무상의 과세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표 18〉에서 보듯이 재벌그룹의 경우 실제의 실효세율은 15.85%로 세무상의 실효세율보다 17.24% 포인트 작다.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제 실효세율은 각각 10.58%와 6.66%로 세무상 실효세율이 비해 9.44%와 5.97% 작다. 일감몰아주기로부터 발생한 증여이익의 세무상 실효세율에 비해 실제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증여이익에 대한 일종의 과세상 특혜로 볼 수 있다.

〈표 18〉 법인유형별 세무상 실효세율과 실제 실효세율의 차이

구분	세무상 실효세율	실제 실효세율	차이
재벌	33.09	15.85	17.24
일반기업	20.02	10.58	9.44
중소기업	12.63	6.66	5.97
합계	21.80	11.49	10.31

주: 실제의 실효세율=(납부세액/추정된 실제 증여이익)*100. 실제 증여이익=세후영업이익*내부거래비중*평균 지분율. 세후영업이익=증여이익/[(내부거래비중-30%)*(평균지분율-3%)]

출처: 채이배(2013)

제4장. 맺음말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를 넘어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세원을 넓히면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세수입의 증대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과세공평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조세체계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들은 보편적 과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벌 대기업에게 집중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와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소위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나타나지 않고,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고용효과 또한 현실적으로 발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라는 3단계의 과세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라는 4단계로 수정하고, 각 과표구간에 대한 세율을 <표 19>와 같이 제안한다.

<표 19> 법인세율 개편안

과세표준	2007년 세율	2013년	개편안
2억원 이하	13%	10%	10%
2-100억원	25%	20%	22%
100-200억원	25%	20%	25%
200-1000억원	25%	22%	25%
1000억원 초과	25%	22%	27%

출처: 참여연대, “2013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제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3.12.18.

둘째, <표 20>에서와 같이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한 12%의 최저한세율과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 16%를 각각 15%와 20%로 상향조정하되, 1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10%를 그대로 유지한다.

<표 20>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안

과세표준	2013년	개편안
100억원 이하	10%	10%
100-1000억원 이하	12%	15%
1000억원 초과	16%	20%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7%	7%

주: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까지는 8%, 그 다음 2년까지는 9% 적용.

출처: 참여연대, “2013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제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3.12.18.

셋째,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최저한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표 6>에서 보듯이 2012년 법인세 세액 공제·감면 9조 4,917억 원 중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액은 4조 5,172억 원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47.3%가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은정(2013)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모든 공제감면세액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실효세율은 전체 법인 기준으로 3.39%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는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해 지배주주 일가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고, 이는 2004년에 도입된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30%를 정상거래의 명목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비율에서 공제하고, 3%의 한계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에서 빼주고 있다. 그 결과 세무상 실효세율과 실제의 실효세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는 재벌그룹 소속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1월 1일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정상거래비율의 1/2인 15%로 공제비율을 낮춘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정상거래비율 30%와 한계보유비율 3%를 기본공제율로 적용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서 그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판단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절대금

액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합병과 분할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피해나가려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매입거래를 통한 일감몰아받기와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행위에 대해서도 과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²²⁾

〈참고문헌〉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2013.10.8.
- 국세청·한국조세연구포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연구』, 2010.
- 곽노현·윤종훈·이병한, “삼성3세 이재용”, 오마이뉴스, 2001.
- 곽정수, “재벌 ‘불법 상속 방법’ 또 한번 ‘잔화’할까”, 한겨레21, 제968호, 2013.7.2.
-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2010.
- 김진방,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 『사람과 정책』 Vol. 5, 2012 봄호.
- 박원석 의원실, “2008~2012 삼성 계열사 법인세 현황 분석”, 2013.11.5.
- 성낙인·박정훈·이창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4호, 2003.
- 이은정,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및 감세·공제감면세액의 귀착효과”, 『경제개혁리포트』 2013-9호, 2013, 경제개혁연구소.
- 참여연대,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이슈리포트 제2012-05호, 2012.
- _____, “2013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제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3.12.18.
- 채이배,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富)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 『이슈&분석』 2011-04호, 경제개혁연구소, 2011.
- _____,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실적 분석”, 『이슈&분석』 2013-16호, 경제개혁연구소, 2013.
- 최재성 의원실, “2012년 10대 기업 실효세율 13%에 불과”, 보도자료, 2013.10.6.

22) 자세한 내용은 채이배(2013) 참조.

추미애 의원실, “재벌 과다사내유보금 어떻게 쓸 것인가?”, 정책토론자료집, 2012.9.

홍종학 의원실, ‘수입금액 100분위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2012년 국세통계연보기준)’, 국세청 자료, 2013.4.26.

Ascher, M. L. “Curtailling Inherited Wealth,” 89 *Michigan Law Review* 69, 1990-1991.

Carnegie, A. *The Gospel of Wealth*, Applewood Books; Reprinted edition, 1998.

Gale, W. G., Hines Jr., J. R., and Slemrod, J., *Rethinking Estate and Gift Taxat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IFC and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base*, 2013.

〈전체 토론회 일정〉

○ 제1차 토론회: 삼성재벌의 지배구조와 축적방식

- * 이재용 시대, 삼성재벌의 지배구조: 송원근
 - * 삼성전자와 양극화 축적체제: 이병천
 - * 법을 조롱하는 자들: 삼성의 세습과 불법 및 초법적 탈법행위: 조승현
- 일시: 12월 13일(금), 오후 2-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204호)

○ 제2차 토론회: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권

- *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자 조직화: 조돈문
 - *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현주소: 삼성전자 여성노동자들과 노동권의 실종: 김진희
 - * 삼성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처리 방식을 중심으로: 한인임
- 일시: 12월 20일(금), 오후 2-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206호)

○ 제3차 토론회: 삼성의 사회적 책임

-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삼성 예외주의: 김정주
 - * 삼성 지속가능보고서 비판적 검토: 이승협, 신태중
 - * 삼성전자와 재벌 대기업의 세제 혜택: 강병구
- 일시: 2014년 1월 10일, 오후 2-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

○ 제4차 토론회: 삼성의 경영방식과 이해당사자

- * 삼성의 인사노무관리 방식: 삼성의 근로시간과 임금. 문제는 없는가?: 류성민
 - * 삼성의 하도급, 과연 상생인가?: 김주일
 - * 삼성광고의 변천으로 살펴본 한국사회 지배담론의 변화: 전승우, 지주형, 박준우
- 일시: 2014년 1월 24일, 오후 2-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

○ 제5차 토론회: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

- * 경제발전과 정부-기업관계의 변화의 측면에서 본 ‘삼성공화국’론: 송태수
 - * 삼성의 법조 지배: 사례와 대안: 김성진
 - * 삼성은 아파트공화국이다: 전규찬
 - * 삼성자사고와 대기업의 교육개입 전략: 김학한
- 일시: 2014년 2월 7일, 오후 2-5시 / 장소: 한겨레신문사 청암홀(3층)

○ 제6차 토론회: 삼성의 사회적 지배와 비용

- 1) 제1부: 삼성의 사회적 지배와 비용
 - * 삼성 X파일 사건을 통해 본 삼성의 사회적 지배: 박갑주
 - * 지속가능사회를 향한 삼성의 진심: 이보아
 - * 삼성의 언론지배: 경제·사회민주화의 걸림돌: 김서중
 - 2) 제2부: 종합토론 “다시 삼성을 묻는다: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사회: 이창근
- 일시: 2014년 2월 21일, 오후 2-5시 / 장소: 한겨레신문사 청암홀(3층)